



제308회 임시회

2012.04.17.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교육의원 박상필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2년 4월 6일

○ 회부일자 : 2012년 4월 10일

3. 제안이유

2009년에 개정된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는 도내 중·고등학교 입학대상 학생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특수한 재능이 있지만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여 왔으나, 조례의 목적과 특별장학생 요건 간에 불일치한 부분과 특별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확대 및 공정성 측면에서 일부 한계가 있어 특별장학생 선정 요건을 확대하고 선발심의과정 체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취학대상자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를 “입학대상자로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 특별한 재능이 높은 자, 품행이 특히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으로 하여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1조).

나. 특별장학생의 요건에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제2조에 신설 함 (안 제2조 4호).

다. 특별장학생 선정은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한 후,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최종 선정함(안 제4조).

라. 특별장학생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9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특별장학생 선정 및 지원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 특별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 특별장학생의 요건에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추가하여 특별장학생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 특별장학생 선정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하여,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 특별장학생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특별장학생 대상자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선정과정의 체계성과 공정성을 높여 특별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인재 발굴 및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발 취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은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